

## 4. 주택공제조합 보증규정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자료제공 :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호 및 제63조 제2호 중 “10일 이내에”를 “7일 이내에”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 제3호 중 “10일 이내에 공급계약자명단을 정구(모사전송에 의한 수신도가능하다) 한다”를 “7일 이내에 공급계약자명단을 정구한다”로 한다.

제54조 제4호 및 제6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합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거래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 제3호 중 “10일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정구(모사전송에 의한 수신도가능하다) 한다”를 “7일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정구한다”로 한다.

제112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며,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조합원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신청시에는 담보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토록 하거나 당해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적미정리 택지의 경우에는 부지공급자가 협약(별지서식 보 제44-2호)을 체결하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으며, 부지공급자가 협약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각서(별지서식 보 제44-3호)와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토지매매 대금환급금 양도통지서(별지서식 보 제44-4호)를 제출받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부지매입보증을 받은 조합원이 주택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2의 규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임대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임대계약금과 국민주택기금을 부지매입보증 해제시까지 조합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제2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 추가징구서류</p> <p>보증서 발급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 한다.</p> <p>1. (생략)</p> <p>2. 공급계약마감일로부터 <u>10일</u> 이내에 “공급계약자명단”을 징구한다. 다만, <u>명단제출을 해태할 경우에는 업무거래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3. 미공급세대를 추가분양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10일</u> 이내에 공급계약자명단을 징구(모사전송에 의한 수신도 가능하다)한다.</p> <p>(신설)</p>	<p>제54조 추가징구서류</p> <p>보증서 발급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u>7일</u> 이내에 ----- <u>(단서삭제)</u></p> <p>3. ----- <u>7일</u> 이내에 <u>공급계약자명단을 징구한다.</u></p> <p>4. 조합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거래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3. 미공급세대를 추가임대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10일</u>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징구(모사전송에 의한 수신도 가능하다)한다.</p>	<p>3. ----- ----- <u>7일</u>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징구한다.</p>
(신설)	4. 조합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p>제63조 추가징구서류 보증서 발급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 구한다.</p>	<p>제63조 추가징구서류 보증서 발급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 구한다.</p>
<p>1. (생략) 2. 임대계약마감일로부터 <u>10일</u>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징구한다. 다만, 명단제출을 해태할 경우에는 업무거래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 2. ----- <u>7일</u> 이내에 ----- (단서 삭제)</p>
<p>제112조 보증취급방법등 ① 조합원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신 청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하 여 협약(별지서식 보 제44호, 제 44-2 호)을 체결하도록 하고, 당해부지에 대 한 사용승락 또는 소유권 이전시에는 당해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적미정리 택지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및 담보제 공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112조 보증취급방법등 ① 조합원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신청시에는 담보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토록 하거나 당해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적미정리 택지의 경우에는 부지공급자와 협약(별지 서식 보 제44-2호)을 체결하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으며, 부지공급자가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각서(별지서식 보 제44-3호)와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토지매매대금환급금 양도통지서(별지서식 보 제44-4호)를 제출받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다.</p>
(신설)	<p>③ 제 2항에 의거 부지매입보증을 받은 조합원이 주택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2의 규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임대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임대계약금과 국민주택기금을 부지매입보증 해제시까지 조합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제2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한 담보물의 취급방법 및 절차등은 담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④ ----- ----- -----</p>

<별첨 2> (별지서식 보 제44-3호)

## 양 도 각 서

본인은 귀조합의 보증을 받아 아래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본인이 부도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귀조합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부지 공급계약 해제시의 부지매매대금의 환급금을 귀조합에 양도함과 아울러 귀조합의 일체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부 지 공 급 자 :

부 지 내 역 :

첨부 부지공급계약서 사본 1부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19 . . .

양도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인감대조필

**주택사업공제조합 귀중**

<별첨 3> (별지서식 보 제44-4호)

##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토지매매대금환급금 양도통지서

귀 기관이 와(과) 체결한 부지매매계약에 따라 귀 기관이에게  
양도하여야 할 아래 목적물의 부지소유권에 대한 제반 권리 및 부지매매계약해지시의 매매  
대금환급금을 별첨 양도각서에 의하여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항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지소유권의 이전 또는 부지매매대금환급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공제조  
합에 이전(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목적물의 소재 :

목적물의 면적 :

첨부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양도각서 사본1부

양도인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양수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주택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위대리인 (인)

수신 (채무자) 귀증

주택회보